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4선거구,

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,

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

용적률의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정비사업 추진 시 이주 비용에 대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이 정비구역공람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이후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 이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, 대신 조합은 추가 보상한 이주비용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현행법상 추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바, 법령에서 위임한 세입자 추가 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추가보상금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